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운영희 의원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9호

「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의료 취약계층 및 아
동과 모성, 정신질환,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
부족한 보건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제공토록 하고
있으나,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
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□ 2022년 기준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12곳의 의사 인력은 정원 대비 15% 부족하고, 일부 병원에서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목 의료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의 장기화로 한때 입원 병동이 폐쇄되거나 병상 가동률이 24%에 그치는 등 공공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공백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된 ‘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시행’ 및 ‘공공보건 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’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시장의 책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